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221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광역시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redacted]법원 2020. 7. 9. 선고 2019구합23037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0. 28.
판 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9. 6. 12.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주식회사 C 설립 당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B가 D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⑨ 이 사건 법인이 2018. 3. 24. 금정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D가 보유하던 주식 1,000주의 이전과 관련하여 이를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항목으로 기재하지 않고 D가 원고 B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⑩ 이 법원이 실시한 원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원고 B는 '2016. 6. 9. 자동차부품업체인 이 사건 법인 설립을 하였는데, 법인 설립 절차를 잘 몰라서 절친한 친구 F의 남편인 법무사 G에게 의뢰하여 법인설립을 하게 되었다. 당시 자신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있어 법인의 이사직이나 주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관계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H과 친하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지내게 되어 H의 처인 D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인중개사로 개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중개와 무관한 법인의 주식 취득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절반에 해당하는 주식을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한 점(제1심 증인으로 나온 D 역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 B와 명의신탁 약정서를 언제·어디서 작성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이 어떤 회사인지도 잘 알지 못하며, 남편이 아는 사람의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그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주식 명의신탁 경위 등에 관한 원고 B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